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17일 09시 29분



목차

목차	2
자료실 - 전체	3
(의료기관용)2021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적 제출 관련	3

(의료기관용)2021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적 제출 관련

2021.12.07 조회수 2478 등록자 유지희

처리부서 의약관리팀

<https://in.kohi.or.kr/index.do>
KOH이 의무교육

***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사이트 링크(위 사이트에서 3번째에 있는 학대신고 클릭하세요) ***

*** 문의 : 의약관리팀 유지희(061-659-4221)

1. 관련 근거

가.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-7422(2021.11.29.)

나. 전라남도 식품의약과-24533(2021.11.30.)호

2.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7항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(이하 '신고의무자' 라 함)가 소속된 기관·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(보건복지부장관)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3. 이에 따라, 각 의료기관에서는 교육 실시 결과를 (붙임4) 서식에 작성하여 2022. 1. 7.(금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붙임 파일 다운로드 : 여수시보건소 홈페이지 - 정보마당 - 자료실 - 132번

* 제출 방법(e-mail) : ans3971@korea.kr (메일 제목에 의료기관명 꼭 기재 요망)

- (교육 기간) 2021. 1. 1. ~ 2021. 12. 31.
- (교육 대상)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고의무자
- 의료기관의 장(의원급, 병원급), 의료인, 의료기사
- (교육 내용)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 등
- (교육 방법)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

붙임 1.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안내 1부.

2. 참고 법령 1부.

3.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&A 1부.

4. 장애인학대 교육실적(의료기관명) 1부. 끝.

첨부파일

전체(Zip)다운로드

 (붙임 1)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안내.hwp (2081 hit/ 35.5 KB) 



[미리보기](#)

 (붙임 2) 참고 법령.hwp (1717 hit/ 49.0 KB) 



[미리보기](#)

 (붙임 3)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.hwp (1717 hit/ 63.5 KB) 

[미리보기](#)

 (붙임 4) 장애인학대 교육실적(의료기관명).xlsx (2346 hit/ 11.0 KB) 

[미리보기](#)

 (공문)2021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요청.hwp (2260 hit/ 48.5 KB) 

[미리보기](#)

목록

이전글

< (의료기관용)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...

다음글

코로나19 백신 폐기 관련 서식(의료기관용) >

Yeosu Web Contents

